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1976)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 번호 2018-55

1.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2.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5 호

중재판정부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The Rt. Hon. Dame Elizabeth Gloster
Professor Pierre Mayer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1 년 1 월 15 일

2020년 12월 14일자 공동 전자우편으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완료된 Redfern 일정의 제출 마감일을 2020년 12월 18일로 연장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지한 바,

2020년 12월 18일 청구인이 41건의 문서개시 요청(이 중 하나는 철회됨)으로 구성된 Redfern 일정을 제출한바,

2020년 12월 18일 피청구국이 26건의 문서개시 요청으로 구성된 Redfern 일정을 제출한 바,

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

A. 문서개시에 적용되는 준거 규칙 및 기준

1. 절차 명령 제 1호 제 4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4.1.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확정 예정인 절차일정표에 따라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요청은 서면으로 하며, 요청하는 문서마다 또는 문서의 분류마다 요청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 가능한 기한 내에 요청된 문서를 개시한다.

4.2.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응하여 개시하는 모든 문서는 각 문서별로 고유번호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고, 문자 검색이 가능한 PDF 형식(제 4.5항에 따라 문서의 원본형식 그대로 개시되어야 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제외)의 전자문서로, 어느 요청에 따라 개시하는지를 명시하는 색인을 첨부하여 요청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4.3. 피요청 당사자가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적용한다:

4.3.1. 피요청 당사자는 어느 문서 또는 어느 문서분류의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지를 명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 동 답변서는 각 이의제기에 관한 사유를 제시하고, 요청된 문서 대신 개시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명시한다.

4.3.2. 요청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반대 여부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한다.

4.3.3. 당사자들은 개시요청 관련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를 추구한다.

4.3.4. 요청 당사자 및 피요청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미해결된 모든 요청을 중재판정부에 공동 제출하여 그 결정을 구한다.

4.3.5.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구하고자 제출된 문서개시요청서와 각 당사자의 이의제기 및 답변은 동 절차 명령에 부속서 1 (수정 Redfern 일정)로 첨부된 예시에 따라 ‘표’ 형태로 작성한다. 당사자들은 요청, 이의제기 및 답변 교신 시 동 예시를 사용한다.

4.3.6.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모든 적용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이의 목적으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규칙(2010)을 참고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개시를 명령한 문서는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절차일정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여 개시된다.

4.3.7.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문서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모든 유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

4.4. 중재판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는 문서개시에 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동 요청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4.5. 엑셀스프레드시트는 문서의 원본형식(즉 엑셀 형식)으로 개시한다. 당사자는 특정한 문서의 원본이 다른 형식으로 생성된 경우, 상대 당사자에게 동 문서를 원본의 전자형식 그대로 개시해 줄 것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4.6. 중재판정부 또한 자진하여 문서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4.7. 당사자들은 문서개시 단계에서 상기 제 4.3.4 항에 명시된 시점 또는 문서교환 시점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를 당사자 간 교신 시 참조수신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4.8. 상기 일정에 따라 개시된 문서는 이후 당사자가 동 문서를 서면입장의 증거물로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이전까지, 또는 문서 교환 이후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이전까지는 정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IBA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만약 개시가 허용될 경우, 중재판정부는 개시가 허용되는 범위를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

3. IBA 규칙은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수립한다:
- a. 요청대상문서 또는 좁은 범주의 문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b. 각 문서 또는 문서 범주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 c. 요청대상문서 또는 문서 범주는 상대 당사자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요청 당사자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 d. 중재판정부는 적용되는 법적 또는 윤리적 규칙에 의한 법적 장애 또는 특권을 고려해야 한다;
 - e. 요청된 증거의 제출은 개시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니지 않게 한다;
 - f. 중재판정부는 보호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업적 또는 기술적 기밀을 고려해야 한다;
 - g. 특수한 보호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별한 정치적 또는 제도적 민감성 (정부 또는 공적 국제기관에 의하여 기밀로 분류된 증거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 및
 - h. 중재판정부가 보호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당사자들의 공정성 또는 평등성에 대한 참작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B. 중재판정부의 판단

4.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의 문서개시 요청 및 상대 당사자의 요청에 대한 각각의 이의제기를 검토하였다.
5. 상기 명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서개시 요청을 첨부된 Redfern 일정 형태에 맞추어 결정하였다.
6. 중재판정부는 문서개시 요청을 결정함에 있어, 현재까지 당사자들이 제기한 사실적인 주장을 고려하여 요청한 문서의 일견(*prima facie*) 타당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주지한다. 본 절차 단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요청대상문서가 본 중재에서 펼친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변론에 대한 판결과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중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동 결정은 당사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7. 중재판정부는 개시요청이 거부된 특정 문서가 추후 절차에서 실제로 청구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도달하면 문서개시에 대한 결정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8. 또한 중재판정부는 동 절차 명령에서 당사자들이 상대 당사자의 문서개시 요청에 제기한 특정 일반적 이의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것임을 주지한다. 개별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첨부된 Redfern 일정에 명시한다.

I. 법적 장애 및 정치적 민감성

9. 당사자들은 피청구국이 한국법에 따라 기밀 문서 및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서의 개시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을 보인다.

1. 당사자들의 입장

10. 피청구국은 IBA 규칙 제 9.2조 제 2항 (b)호 및 제 9조 제 3항 (c)호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고려해야 할 한국법이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 중 몇 가지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1.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한국법이 중재 절차에서 개시 할 수 없도록 지정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 a. 1급 기밀, 2급 기밀 또는 대통령 경호 운영 규칙령에 따른 3급 기밀 (증거 R-363);
- b.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문서” (증거 R-361);
- c.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박근혜 행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 (증거 R-348).

12. 피청구국은 요청된 문서가 상기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기밀대상일 수도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 다수에 이의를 제기한다.

13. 대안으로 피청구국은 1급 기밀, 2급 기밀 혹은 3급 기밀로 지정된 문서는 IBA 규칙 제 9조 제 2항 (f)조에 따라 정치적 민감성이라는 별도의 근거에 의해 문서개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한국법에 의해 제기된 제한사항들 중 어떠한 것도 요청대상문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출제외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문서개시 요청에 포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청구국이 상세한 법적 장애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또한 청구인은 국제법에 따른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법에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중재판정부의 판단

16.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유로 문서, 진술서, 구두증언 또는 조사를 증거 또는 제출로부터 제외한다:

[...]

(b)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하다고 결정한 법적, 윤리적 규칙에 의한 법적 장애 또는 특권이 있는 경우;

[...]

(f) 중재판정부가 보호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특별한 정치적 또는 제도적 민감성 (정부 또는 공적 국제기관에 의하여 기밀로 분류된 증거 포함)이 있는 경우 [...]

17. 중재판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면제를 발동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요청대상문서 중 어떤 것이 문서개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문서가 어떠한 법적 장애나 특권, 정치적 또는 제도적 민감성이 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
18.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문서범주가 국내법에 의해 기밀이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b)조에 따라 충분치 않다.
19.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이의에서, 피청구국은 “요청에 상응하는 문서가 비밀 문서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서 “요청에 상응하는 문서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¹ 피청구국은 또한 본 문서개시의 목적을 위해 “공개될 수 없는 문서”로 분류된 문서를 식별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0. 상기 근거로 인하여 중재판정부는 현재 피청구국이 제기한 문서개시 제외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21. 피청구국이 기밀이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서를 문서개시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해당 문서를 식별하고 문서개시 제외에서 정당인지 여부를 청구인 및 중재판정부가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b)호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 장애나 특권을 발동하는 당사자가 상응 문서의 상태를 검색하고 식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¹ CDR-1 에 대한 피청구국의 이의제기 참조.

22.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문서개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모든 문서에 대해 부록서 I 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외목록을 문서개시 요청 별로 정렬하여 작성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23. 당사자들은 문서개시 제외문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해서만 개입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외목록의 교환일정 및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미해결 사안을 통지하도록 한다.

II. 문서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24. 또한, 당사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특정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문서개시 목적에 의해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이견을 보인다.

1. 다른 메이슨 단체가 보유 중인 문서

a) 당사자들의 입장

25.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문서개시 요청에서 “메이슨”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본 중재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관련 단체를 포함하였다고 주장한다.
26. 피청구국은 메이슨이 본 중재의 두 청구인을 넘어 여러 단체들을 통해 단일 사업 관심사로 운영된다는 점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본 중재의 당사자인 두 메이슨 단체에만 문서개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b) 중재판정부의 판단

27.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에 대한 피청구국의 정의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응 문서들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검색에 따라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한 상응 문서들을 그러한 단체들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응 문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제안한 점을 주지한다.²
28. 상기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는 중재판정부로부터 어떠한 결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2. 한국 사법부 및 검찰이 보유 중인 문서

a) 당사자들의 입장

² 피청구국의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 소개, 제 4 항.

29. 피청구국은 한국 사법부 또는 한국 검찰이 보유 중인 문서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0. 피청구국은 한국의 헌법이 삼권분립 및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한국법이 한국 정부(혹은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이나 검찰청이 보유 중인 수사 자료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국은 특별 검찰청이 보유 중인 문서를 한국 정부가 입수하는 것은 더욱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31. 뿐만 아니라, 피청구국은 종결된 재판기록이나 수사자료를 입수하는 능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제 3 자만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중재에서의 문서개시 의무는 한국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청구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재판기록 및 검찰의 수사 자료를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b)조의 의미 내에서 법적 장애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32.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국제법상 하나의 독립체이며, 사법부 및 검찰은 국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구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본 절차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고 있는 국가 기관과 상관없이, 피청구국이 사법부와 검찰이 보유 중인 문서를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3. 또한 청구인은 한국법이 본 중재에서 요청된 문서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국이 한국 사법부 또는 검찰이 보유 중인 문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법적 장애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 중재판정부의 판단

34. 중재판정부는 본 중재에서 법무부가 피청구국을 대리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지만, FTA 당사국 및 이에 따라 본 절차에서의 피청구국이 법무부가 아닌 국제법의 단일 주체인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주지한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법원 및 검찰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국가기관으로서 본 문서개시의 목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피청구국 스스로도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이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문서는 대한민국이 소유, 보관 및 통제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³
35. 법무부가 한국법에 의해 한국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문서를 입수할 수 없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이 문제가 동 사안에 대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임), *엘리엇 대 한국* 중재판정부가 확인한 바와

³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에 대한 피청구국의 일반 의견, 제 108 항.

같이, 한국 법원 및 검찰 등 다른 국가 기관들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⁴

36.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법원, 검찰청 또는 특별 검찰청이 보유한 문서가 피청구국의 소유, 보관 및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한다.
37. 피청구국의 법적 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속의 다른 부서가 한국법에 의해 한국 사법부 또는 검찰로부터 문서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b)조에 해당하는 법적 장애라는 피청구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청대상문서를 개시하는 곳이 법무부, 한국 법원, 검찰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인지 여부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내에서 본 중재의 주된 접점이 법무부라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내부적 권리와 권한이 피청구국의 국제법적 의무의 범위를 결정짓지 않는다.
38.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한국 법원, 검찰 또는 특별 검찰청으로부터 문서를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 (b)조의 의미에 있어 법적 장애가 된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3.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문서

a) 당사자들의 입장

39. 피청구국은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문서를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문서가 피청구국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연금이 국가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문서개시 결정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상응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한다.
40.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문서를 피청구국이 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좁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한국법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없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민연금으로부터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여기는 다수의 내부 국민연금 문서를 기록에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문서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 특혜를 얻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연금으로부터 문서를 입수하겠다는

⁴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절차명령 제 8 호,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 부속서 EE, 제 14 항.

피청구국의 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한다.

b) 중재판정부의 판단

41. 당사자들은 피청구국과 국민연금 간의 정확한 관계 및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인지에 대한 여부는 본안 쟁점에 해당함에 동의한다.
42.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현안들이 동 문서개시 단계에서 (단 하나의) 목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피청구국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청구인의 입장에 동의한다.
43. 중재판정부는 본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변론 없이도, 특히 국가 귀속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법에 의해 국민연금이 복지부장관(따라서 한국 국가)의 일부 관리 하에 있는 것처럼 추정된다는 청구인의 입장에 동의한다.
44.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엇 대 한국* 중재판정부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IBA 규칙 제 3 조 제(3)항 (c)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로 해당 정부 법인이 요청 문서를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한다고 추정하는지 관련 근거를 제시할 경우 피청구국은 관련 해당 문서를 문제의 정부 법인으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⁵
45.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i) (피청구국이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문서를 포함하지 않은) 국민연금이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요청 문서를 식별하고 입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ii)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한다.
46.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문서개시에 관한 동 결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른 문서개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감독 및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피청구국이 국민연금과 교신 시 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을 참조수신자로 지정하고 국민연금의 답변 사본을 청구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한다.

⁵ *Elliott Associates, L.P. (U.S.A.)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 절차명령 제 8 호, 청구인의 문서개시 요청 부속서 EE, 제 20 항.

C. 명령

47. 상기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당사자들은 절차 명령 제 4 호에서 갱신된 절차일정표에 따라 **2021년 2월 1일**까지 첨부된 Redfern 일정에 명시된 대로 문서를 제출 및/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 b. 당사자가 IBA 규칙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상응 문서를 제출에서 제외하고 첨부된 Redfern 일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 **2021년 2월 1일**까지 부속서 I에 명시된 형식으로 보류된 문서 일지를 제공해야 한다.
- c. 요청대상문서가 국민연금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피청구국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에 포함되지 않고), 피청구국은 (i) 상기 46 항에 명시된 대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요청된 문서를 식별하고 입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ii) 입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21년 2월 1일**까지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d. 개시가 명령되었거나 당사자가 개시의지를 표명한 문서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개시된 문서의 색인을 제공하고 문서가 어느 요청에 상응하였는지에 대해 표시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상응 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e. 나머지 모든 문서개시 요청은 기각하지만, 상기 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문서개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침해되지 않는다.

중재지: 싱가포르

(서명)

Professor Dr. Klaus Sachs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

